

의안번호	제261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
2024. 3. 5.

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
예 산 군 수

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 5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(안 제1조)
- 나. 「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 개정 사항 반영
 - (안 제3조) 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내용 삭제
 - (안 제7조) 고등학교 무상교육(2021년 시행)에 따른 고등학교 공납금 지원 조항 정비 및 지급 한도 조정
- 다. 예산군 새마을회 명칭 변경(2010. 4.)에 따른 명칭 수정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 - (현행) 새마을운동군지회 / 군지회장 → (개정) 예산군 새마을회 / 군회장
- 마. 장학금의 소요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(안 제12조)
- 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5조,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 【붙임 1】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3. 12. 5. ~ 12. 25.(20일간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 분석: 2023. 12. 12. 【붙임 3】

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예산군”을 “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예산군”으로, “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”을 “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새마을운동”을 “장학생은 새마을운동”으로 하고, “유공자는”을 “제1호의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1.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

나.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

다.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
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

제4조 중 “새마을운동군지회장에게(이하 “군지회장”)”을 “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(이하 “군회장”)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지회장”을 “군회장”으로, “개시”를 “시작”

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 본문 중 “군지회장”을 “군회장”으로, “개시”를 “시작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가 다음”을 “사람이 다음”으로, “해당 학년”을 “당해 학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지회장”을 “군회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, 소요액의 50퍼센트는 군비로 나머지 50퍼센트는 도비로 보조 받는다”를 “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</u>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<u>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·여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</u></p> <p>1. <u>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예산군 -----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<u>장학생은 새마을운동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, <u>제1호의 경우에는</u> -----.</p> <p>1. <u>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가.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나.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다.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</u></p>

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다.

제4조(추천) -----

--- 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(이하 “군회장”-----
-----.

제5조(선발) 군회장-----

----- 시작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2. ~ 3. (생략)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·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새마을운동군지회장에게(이하 “군지회장”이라 한다)추천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발) 군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·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발하여 매 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(이하 “도회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7조(장학금액)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과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

3. ~ 5. (생략)
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

제7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-----
----- 군회장-----
----- 시작 -----
----- . -----
----- . -----

제9조(지급과 정지) ① -----
----- 사람이 다음 -----

----- 당해 학년 -----
----- .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군회장-----

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.

제12조(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)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, 소요액의 50퍼센트는 군비로 나머지 50퍼센트는 도비로 보조 받는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12조(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) -----

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【붙임 1】 관계법령

□ 「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·녀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4. 24.>

1.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3. 4. 24.>

가.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<신설 2023. 4. 24.>

나.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<신설 2023. 4. 24.>

다.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<신설 2023. 4. 24.>

2. 우등성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<개정 2023. 4. 24.>

3. 특기성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<개정 2023. 4. 24.>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. <개정 2023. 4. 24.>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·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3. 4. 24.>

제7조(장학금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3. 4. 24.>

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간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예산군 행정복지국 총무과장 박상목

【붙임 3】 성별영향평가 분석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
관리번호	2023A충남예산102		
정책명	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충청남도 예산군	
	부서명	총무과	
	담당자명	이지은	전화번호 041-339-7233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12월 6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총무과)	'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한 사항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'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12월 12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이용미/041-339-7912)</p> <p>총무과장 귀하</p>			

담당자 현황 [행정복지국장 정윤교 총무과장 박상목 새마을공동체팀장 구진아, 담당자 이지은 041-339-7233]